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92
----------	------------

제안연월일 : 2024년 6월 2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상충될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분양권 등 조례 제정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특별회계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조례 성립이 어려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가.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건축행위 허용기준의 행위주체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 라. 이주대책 마련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백제 한성 도읍 유적으로 국가유산 사적 제11호인 서울
풍납동 토성 및 그 일대를 말한다.”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지역의 행정동인 풍납1동과 풍납2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
다.”를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보존·관리 구역 내 지역주
민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9조로 하며,
안 제10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안 제10조)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
한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위촉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하여 “4. 서울
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풍납토
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의 임기·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중 “허용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허용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송과구청 및 국가유산청에 협조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이주로”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로 하고,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주대책을”을 “이주대책”으로 하고,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중전의 안 제6조)의 제목 “(주민지원사업의 위탁 및 지원)”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11조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풍납토성</u>”이란 <u>백제 한성 도읍 유적으로 국가유산 사적 제11호인 서울 풍납동 토성 및 그 일대를 말한다.</u></p> <p>2. “<u>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u>”이란 <u>제1호의 지역의 행정동인 풍납1동과 풍납2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u></p> <p>3.·4.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풍납토성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 (생략)</p> <p>제6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p>	<p>제2조(정의) ----- -----.</p> <p>1. ----- 「<u>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u>」 (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p> <p>2. ----- ---- <u>법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보존·관리 구역 내 지역주민을 말한다.</u></p> <p>3.·4.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 ----- <u>할 수 있다.</u></p> <p>제6조 (제정안 제5조와 같음)</p> <p>제9조(사무의 위탁) ① (제정안 제6조와 같음)</p> <p><u><삭 제></u></p>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시장은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상생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이주대책 등) ① 시장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이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을 마련 시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풍납토성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이주대

②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

----- 허용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송과구청 및 국가유산청에 협조한다.

제8조(이주대책 등) ① -----
-----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

----- 마련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 -----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 제>

책으로 활용될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특별분양권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 <삭 제>

은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과 풍납토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보존·관리구역 안의 공유재산 처분 재원
4. 국가 및 시의 출연금
5.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6. 전년도 이월금
7. 차입금
8.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지출
2. 풍납토성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비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관광
개발 및 관광활성화 사업비

5.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업비

6.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업
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
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
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
대책 마련 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설치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회의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④ 자문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제정안 제4호와 같음)

④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
위원의 임기·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삭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함께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납토성”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보존·관리 구역 내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주민의 거주·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이주대책”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이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납토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납토성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등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도시개발·부동산·건설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의 임기·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3.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관광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5.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국가유산 관련 민원 상담 사업
6.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력·통신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지하화 사업
7. 보상이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가유산 규제에 의한 재산권 침해, 거주환경 악화 등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시장은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 상생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 및 국가유산청에 협조한다.

제8조(이주대책 등) ① 시장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 마련 시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